

2. 대구광역시 재난현장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

1. 심사경과

- 발의일자 : 2018년 9월 21일
- 발 의 자 : 임태상·강민구·김대현·박우근·서호영·이시복·이영애·이태순·하병문·황순자 의원
- 회부일자 : 2018년 9월 28일
- 상정일자 : 제262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 
제2차 기획행정위원회(2018년 10월 12일), 원안가결

2. 제안설명 요지(제안설명자 : 임태상 의원)

□ 제안이유

- 화재 등 재난상황 발생시 소방대 도착전까지 현장에 근접한 시민들의 자발적 초기대응이 재난 및 피해를 저감시키는 주요 요인으로서, 재난현장에서 소방활동에 제공된 민간자원 손실에 대한 보상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시민들의 자발적인 소방활동 참여를 유도하고 현장대응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임.

□ 주요내용

- 조례의 목적을 명시함(안 제1조).
- 재난, 소방활동, 관계인, 민간자원, 소요비용에 관한 용어를 정의함(안 제2조).
- 민간자원 손실에 대한 지원 및 보상방안 마련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는 등 시장의 책무를 정함(안 제3조).
- 민간자원 제공에 대한 현장 소방대장의 관리사항을 규정함(안 제4조).
- 소방활동에 제공된 민간의 인적·물적 자원 소요비용 및 손실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(안 제5조 및 제6조).

3. 검토보고 요지(보고자 : 전문위원 서오섭)

○ 먼저, 조례안 제정의 배경을 살펴보면

- ▶ 대구소방안전본부의 최근 3년간 민간자원 활용 현황을 살펴보면, 발생건수 14건, 동원장비 18대, 예상보상금액 6,300천원으로 화재진압등의 소방활동에 민간자원을 활용한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으나, 보상에 대한 지원근거가 없어 실제 보상금 지급사례는 없음.

(단위:천원)

연도	합계			화재			구조		
	발생건수	동원장비	예상금액	발생건수	동원장비	예상금액	발생건수	동원장비	예상금액
계	14	18	6,300	7	11	3,500	7	7	2,800
2017	3	3	800	2	2	500	1	1	300
2016	7	11	4,400	3	7	2,400	4	4	2,000
2015	4	4	1,100	2	2	600	2	2	500

- ▶ 재난현장에서의 선제적 대응과 대구시의 도심확장에 따른 소방력 대응한계 지역에 대한 민간인의 자발적 초기대응 및 긴급조치활동 등은 필수적인 사항이며 이에 따른 인적·물적 자원 손실에 대한 보상의 근거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자발적 재난현장 참여를 유도하고 적극적 초기대응으로 재난피해 저감 및 사회적 비용 절감을 위해 필요한 조례임.

○ 다음으로,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,

- ▶ 안 제1조 및 안 제2조에서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(재난, 소방활동, 관계인 등)를 정의하였음.
- ▶ 안 제3조에서는 소방활동에 제공된 민간자원 손실에 대한 지원 및 보상 방안 마련에 대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음.
  - 상위법인 「소방기본법」 및 「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」에서 재난관리활동 중 손실을 입은 자에 대해서는 손실을 보상토록 명시하고 있고, 보상 의무를 시·도지사에게 위임하고 있다는 점에서 적법한 것으로 판단됨.
- ▶ 안 제4조에서는 최초 재난 발생 목격자의 소방대 도착전 소방활동 및 자원제공과 이에 따른 민간자원 제공에 대한 현장 소방대장의 관리사항을 명시하였음.
  - 소방대장의 관리사항 중 소방활동에 제공된 민간자원의 현황 파악 및 기록·관리 의무는 민간자원의 인적·물적 손실에 대한 지원 및 보상시 기초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보다 체계적이고 세부적인 기준 마련이 필요할 것임.
- ▶ 안 제5조와 안 제6조에서는 재난발생시 화재진압, 인명구조 등의 소방활동에 제공된 인적·물적 민간자원의 손실에 대한 지원 및 보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음
  - 재난 발생시 시민들의 현장 긴급조치활동 등을 함에 있어 인적·물적 손실에 대한 보상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것임.
  - 다만, 조례시행에 따른 보상청구 및 사용빈도 증가를 예상하여 시행규칙 제정시 보상대상과 범위 및 청구기간 등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정하고 적정한 소요비용 산정 근거 마련이 필요할 것임.
- ▶ 이번 제정안 제출은 재난 발생시 재난대응활동에 제공된 민간자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및 보상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민들이 재난대응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적극적인 초기대응으로 피해저감 및 사회적 비용 감소를 가져 온다는 점에서 이 조례의 제정은 적절하다고 판단됨.

※ 타 시·도 관련 조례 제정 현황 : 9개

(서울, 부산, 인천, 울산, 경기, 충북, 경남, 전남, 강원)

- ▶ 다만, 민간자원의 활용에 있어서 그 손실에 대한 보상은 복잡다양한 사례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규칙 제정을 통해 체계적인 보상 기준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며, 제도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홍보 활동을 통해 시민들의 자발적 소방활동 및 지원이 확산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임.

4. 질의 및 답변요지

○ 없 음

5. 토론요지

○ 없 음

6. 수정안 요지

○ 없 음

7. 심사결과

○ 원안가결(재석의원 전원찬성)

8. 소수의견 요지

○ 없 음

9. 기타 필요한 사항

○ 없 음